



2. 우리나라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우리 정부는 “선진국을 따라 가려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206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206개 국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140여개 국가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 재화·용역, 교육, 상업시설,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약 35개국에 불과합니다.¹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약 1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76개국에서는 지금도 동성 성행위를 형사 처벌합니다. 8개 국가에서는 사형으로, 12개국에서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23개국에서는 8년~1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² 반면에 나머지 대다수 130여 개국(전 세계의 약 63%)에서는 동성 성행위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다수의 국가들과 같이 군대내 동성 성행위를 제외하고는 동성 성행위에 대해 아무런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LGBT(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1 Anti-discrimination (sexual orientation), NationMaster, <http://www.nationmaster.com/country-info/stats/Culture/Sexuality/Homosexuality/Anti--discrimination-laws>.

2 Sexual Orientation Laws in the World-Criminalisation, ILGA, https://ilga.org/downloads/2017/ILGA_WorldMap_ENGLISH-Criminalisation_2017.pdf.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유엔조약은 없으며 유엔조약들을 공정하게 해석했을 때 이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 조약은 하나도 없습니다.³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국제인권조약에도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명문으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의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이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유엔 가입국들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범죄화·동성혼 합법화가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의 최고규범인 유엔헌장에서 성에 관한 관습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체계의 영역이

라고 인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거의 모든 UN 기관과 기금, UN사무국(UNICEF, UNDP, UNESCO를 포함)이 교육, 재생산 보건(낙태권)과 궁극적으로는 UN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과 성인을 위한 “LGBT권리”를 옹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국제기구들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치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1년과 2015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행위에 관한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근거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국제연합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나 인권 부분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유엔 회원국에게는 개인에게 그의 성적 선호와 행동에 근거하여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법을 실행할 국제법상 의무가

3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t the United Nations, Factsheet, 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 2015.11.10.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내재적 존엄성과 가치에 의해 동일한 기본적인 권을 가집니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이 갖는 권리를 뜻합니다. 개인이 LGBT라 해서 다른 시민들의 인권을 넘어서 그들의 성적체성 또는 성적 행동에 따른 특별한 추가적 인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규제 없는 성적 자율성 또는 성적 행동, 동성 간의 결혼과 같은 성적 행동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적체성을 표방하는 것이 특별한 법적 보호 또는 국제법 하에서의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 소수 국가가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할 때 성적 지향과 성적체성에 대한 권고안 결의를 주장했으나 대다수의 권고안이 거부되었습니다. 소수의 국가들이 UPR에서 LGBT권리를 주장했고, 대부분이 서유럽국가들이었습니다. 195개의 UN회원국 중에서, 82%의 국가는 첫 UPR기간에 성적 지향 또는 성적체성 관련해서 어떠한 단독적인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90%의 국가들이 5개 미만의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권고안들의 주 표적이 되는 아프리카는 권고안 중 10%만을 수용합니다.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 편향성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그러합니다. 2018년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

국인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탈퇴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각국은 유엔헌장 제2조에 따라 자국의 국민의 건강과 윤리를 법률로 보호할 자주적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국가들만이 자국법에서 성적지향과 성적체성 개념을 인정하는 반면, 여러 국가들이 LGBT들의 삶에 수반되는 위험들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윤리를 보호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들은 본질적으로 각국의 국내 사법관할권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은 LGBT 행위를 언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법들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법이 LGBT 행위를 보호하지 않기에, 그런 행위 보다 각국의 주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젠더(성)평등 정책 시행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GBT(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서 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여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의 오랜 관행과 합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